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03 발의연월일: 2024. 8. 22.

발 의 자:김정호·어기구·박 정

허종식 · 김남희 · 윤후덕

이연희 • 박희승 • 이훈기

박해철 · 신영대 · 전재수

이수진 · 임미애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 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의원이 직접 정부 및 행정기 관 등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의원이 직접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적시에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이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소속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의정활동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04호), 「국정감사 및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05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128조의2"로 한다.

제128조의2를 제128조의3으로 하고, 제1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8조의2(의원의 서류등 제출 요구) ① 의원은 안건의 심의 또는 국 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소속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는 제128조제2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8조(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제128조(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요구) ①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	
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	
진·영상물(이하 <u>이 조</u> 에서	이 조 및 제128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u>조의2</u>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	
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	
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	
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28조의2(의원의 서류등 제출
	요구) ① 의원은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소속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요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는

| 제128조제2항·제5항 및 제6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 또 는 위원장"은 "의원"으로 본다.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생 략) | 제128조의3(결산의 심의기한) (현 행 제128조의2와 같음)